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법인회생 개시업체의 계약체결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던 00사가 2007.11.30자로 당좌거래정지(부도)를 맞아으나 2008.1.11자로 법인회생(화의)개시결정을 득하여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현행 지방계약법 부도업체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도 이후 법인회생결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동 법규가 적용되는지? 또한 계속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증,감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49호) 제 7조 2항 규정에 의하면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대상이 아니며, 입찰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250호) 제19조의 각항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와 회신

2. 공사대금 미청구시 하자보수 처리방법 및 공탁 관련 질의

【 질 의 】

- 00구에서 공사발주, 계약, 준공검사 완료한 사업건에 대하여 공사업체의 채권가압류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하자보증금도 징구 되지 않은 상태에 공사대금 일부에서 하자보수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업체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처리방법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채권압류 등이 있고 대가청구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정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에서 공종별 계약금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한 금액(하자불분명 복합공사의 경우 합산금액에 주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노임은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탁처리 등 민사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3. 설계변경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000공원 조성공사에서 본동 진입공간인 보행자 진입터널 내장공사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현장설명서에 누락되어 있고, 단지 계약 내역서에만 1식으로 표기되어 시공을 위한 자재, 방법 등을 확정할 수 없음.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한 견적서 및 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설계 변경시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근거로 설계도면 및 시방을 확정해야 하는지, 설계도

면 및 시방서를 확정 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일치시켜 내역서에 신규 단가로 반영 설계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상이,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1식으로 되어 있다면,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아니하나,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공사의 시공방법 및 도면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조건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확정 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동 조건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단서조항에 의하면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위임된 국가를당사자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26호(2004. 12. 31)의 의하면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으로 집행계획 공고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어
-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술용역비는 250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에 의

질의와 회신

한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인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되나,
-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 3억미만으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의 4번 항목에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입찰 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명시하여 알려주고 입찰후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여 그 점수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에 의하여 적격심사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자본금에 관한 질의

【 질 의 】

- ○○도 어장정화·정비사업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협의 재정정책팀-7010, 2007. 10. 30)의 평가항목에 시행능력(배점 20점)의 심사분야중 자본금 2억원 이상(배점5점)이 심사항목으로 되어 있는바, 이 자본금의 성격이 법인체의 사업 종류별로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인지 법인체의 자본보유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지 아니한 일반용역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법인의 경우 법인전체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운용하는 기준이므로 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중인 제안공모 심사에 대한 질의

■ 질 의 ■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예비심사 결과 작품 공개를 하지 않고(심사표 작성하지 않음), 응모작품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실시하자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예비심사위원회 의결대로 당초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 결정없이 재공모실시가 가능한지, 재공모가 가능하다면 이전 응모한 작품과 함께 심사가 가능하지, 아니면 당초 공모안대로 심사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예비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모작품수가 적다하여 유찰 처리 후 재공고를 부칠 수 없으며 당초 공모안대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예비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7. 건설공사 감리대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책임감리용역 발주시 현지 차량운행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2개 공구에 대한 통합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편의 미제공으로 기반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업무처리와 검측업무처리 등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감리용역사에서는 현지 차량운행비에 대한 추가계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 감리용역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지 차량운행비는 감리대가 기준에 의한 직접경비에 해당되므로 간접경비와 달리 기 계약체결된 감리용역 일지라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하여 현지 차량운행비를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 산출내역서상 단가, 금액의 과다·과소, 품셈·일위대가표의 변경, 원가계산의 과다·과소 산정은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8. 기술용역 정산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계가 접수된 후 당초 사업부서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설계 완료된 금액이 적은 경우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확정계약으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는 지역제한(사업체의 주소)과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현황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위반인지의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경쟁입찰에 있어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발주(사업)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7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Ⅲ-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공사의 일부에 적용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를 해야 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바, 입찰 전에 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제출받아 제출한 자로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시에서 추진중인 용역건에 대해 해당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를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중에 있는바, 지방계약법상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이미 계약이 이행중에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현재 이행중인 계약의 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회신

11.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 질 의 】

-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률에 따라 계약내역의 모든 부분의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최초설계서대로 재료비, 노무비는 조정하지 말고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에서만 낙찰률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낙찰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는 작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물품입찰에 “G2B분류번호30121701(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을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자로서 건설기본법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공동계약불허), 해당 제조업체 중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지역별로 분할할 경우 지역별 독점공급자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함
- 당사는 제조업체와 판매가 분리된 후자에 해당하는바, 선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9호) Ⅲ-2-가.에 의거 선금지급대상 적용범위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과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인 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제조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제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입찰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조치 여부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지방교육청 관내 폐지학교에 대하여 매각입찰 공고하면서 폐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예방하고자 폐교활용 용도를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여「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자격을 심의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단, 매각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였음
 - 입찰참가 자격을 통보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민원처리 기한인 15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이 경우 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청의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중 “다. 매각재산 소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거 낙찰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허가 규정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 － 귀 질의 경우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에 해당되므로 당해낙찰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자치단체에 귀속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II. 공동도급 관련 질의모음

1.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서 대표사 선정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
A사 : 시공능력공시액 30억, 3년 시공실적 70억 (타지역업체)

B사 : 시공능력공시액 5억, 3년 시공실적 3억 (○○도업체)의 경우에

- 첫째, A사 50%, B사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B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 둘째, A사 49%, B사 51%의 비율로 참여하여 B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Ⅱ.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2.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시공능력이나 시공실적이 더 우수한 A가 50% 이상 참여하여 대표사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에 업체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발주처 계약담당자도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주처 계약담당자 재량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Ⅱ-1-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출자비율로 구성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분담한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며, 실적·기술보유상황·시공능력공시액 등 계약이행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합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대비 시공능력공시액 및 실적이 미달되는 지역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거나 출자비율을 많이 배분하는 것은 공동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 적격심사 평가시 시공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실적은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으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감점을 만회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실적 등 입찰참가자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더 많이 배분하여 대표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회신

2. 지역제한범위공사 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지역제한대상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 참여업체를 지역업체 단독 참여가 아닌 지역업체 수개업체(2-3개 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업체간의 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면 업체간의 참여비율을 정하여 참여토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222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2개 이상의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자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V-1-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49%이상 등 임의로 출자비율을 정하여 명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공동도급시 구성원수의 제한에 관한 질의

【 질 의 】

-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여러 기술분야(전기, 신호, 통신, 기계, 건축, 차량 등)를 통합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 행자부 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구성원 수에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 하나의 발주 사업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구성원 수가 5인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 인지
- 아니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회사의 구성원 수만을 제한하고 있는지.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회사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 영요령 II-1-나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종전에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10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있어 오히려 공사의 효율 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제한을 두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을 불문하고 하나의 계약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가 5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공동도급 발주 관련 질의

■ 질 의 ■

질의 1)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기술공모 공고시,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설비업, 전기공 사업, 기계설비업,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분야도 함께 일괄입찰 기술공모를 할 경우 조달청에 일괄입찰 의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자체 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발주할 경우 공동계약을 보면 공사부문에만 40%이상 지역업 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술공모의 경우도 기술+시설인 경 우로 판단되어 공고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몇%로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일괄입찰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는 2008년부터, 대안입찰·일괄입찰은 2010년부터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발주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회신

-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사부분만 공동도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의무 기준과 시공실적증명서 인정관련 질의

【 질 의 】

질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Ⅲ.1.가.에는 공동도급계약 대상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공동도급대상은 계약금액 0000 이상 0000 이하’와 같은 금액기준은 없는지 여부

질의 2)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시공실적증명서 인정과 관련해 입찰참여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확인만 받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공동계약 대상금액 기준은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산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공사는 추정가격 222억원미만,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억원미만이 해당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전기·통신·소방이 복합된 공사·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계약의 목적·성질상 긴급한 경우·소규모인 경우·비밀을 요하는 경우·동일현장에 2인이상을 동시에 투입하면 작업상 혼잡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인정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바, 하도급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에 원도급사의 확인(증명)외에 발급기관(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의 자격요건 관련 질의

■ 질 의 ■

질의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자격요건에서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들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8호)에 의하면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지역업체참여도 점수에서 지역업체와 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에서

가) 공동이행방식만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나) 분담이행방식도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I-1-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출자비율로 구성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분담한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며, 실적·기술보유상황·시공능력공시액 등 계약이행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합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역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분야별) 금액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산정하여 해당점수를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에 과업내용별(분야별)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회신

7. 공동수급계약에서 구성원사의 인수합병 관련 질의

【 질 의 】

- 우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발주한 공동수급형태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인 A사와 공동으로 참여한 B사가 C사로 합병되어 B사의 권리의무가 C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을 경우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동수급자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I-8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구성원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합의하여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보증서 변경, 합병 및 계약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8. 공동수급시 구성원의 면허구비 요건 관련 질의

【 질 의 】

-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입찰참가자 수가 제한될 수 있어 서로 다른 법령뿐 아니라 같은 법령에서도 공동수급시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에게 관련 면허를 각각 구비하도록 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를 모두 갖추고 출자비율로 구성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분담한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만 갖추면 되는 바,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가 복합되는 경우나 동일법령내에서 면허가 복합되는 경우에도 보유자가 적으면 입찰참가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공동도급업체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 의 】

- 계약 개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도급가능여부 : 최초 공고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 함.
 - 계약상대자 : 단독업체
 - 기타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을 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과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변경을 하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길 원하고 있음(발주자도 지방계약법상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으로의 변경의 승인여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공고에 공동수급업체의 자격조건을 대표사와 대표사 이외 공동수급업체를 다르게 했다면, 추가되는 공동도급업체는 현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최초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업체의 자격만 지니면 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분담한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을 추가

질의와 회신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과업추가로 인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Ⅲ-8-나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이행 중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과업내용 변경이나 과업추가로 인하여 공동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성원 각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각각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구성원 탈퇴시 지분을 조정 관련 질의

■ 질 의 ■

- 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을 49%이상으로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타지역A업체가 대표사로 51%, 공동수급사로 지역B업체가 41.5%, C업체가 7.5%의 지분으로 공동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지역업체인 B업체(41.5%)가 공사를 포기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상 49%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나머지 지역업체인 C업체가 B업체의 지분을 승계하여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잔존구성원인 A,C업체가 계약당시 지분율대로 지분을 승계하여 계약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포기한 B업체의 지분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또 다른 타업체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A는 $51\% / (51 + 7.5) = 87.18\%$, C는 $7.5\% / (51 + 7.5) = 12.82\%$, 또는 A는 $51\% + (41.5\% \times$

$51/(51+7.5)=87.18\%$, C는 $7.5\% + \{41.5\% \times 7.5/(51+7.5)\}=12.82\%$ 로 산정하고,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입찰참가자격요건이므로 계약체결 이후에 지역업체가 탈퇴한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반드시 지역업체에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이행이 곤란한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바, 이는 지분율이 없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균등배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에 탈퇴자가 발생한 경우 잔여공사에 이익이 있으면 서로 지분율을 많이 가지려 하고, 손해가 나면 서로 지분율을 안 가지려 하겠지요).

11. 공동도급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질의 1)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3~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특히 협상이 가능한 계약을 물품, 용역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인테리어 시공 및 각종 과학 기자재 구매 등을 대행해 주는 용역계약으로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만약 가능하다면 제안서를 제출 받는 대상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나 실내건축업 등의 업체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 면허 업체여야 하는지, 또한 결정된 업체(실내건축업 면허도 소지)에서 과학기자재 납품뿐만 아니라 천만원 이상의 전기,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물품 · 용역 등에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 · 용역 · 물품이 복합되어 전문성 ·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도급으로 협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회신

질의2,3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포함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벽·천정·바닥등 실내마감공사가 포함된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전기설비가 포함된 경우 전기공사업, 내부인테리어의 경우 인테리어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요한 면허를 명시하여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비율을 40%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제227호)에 보면 건설산업산업기본법령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30억(전문공사3억)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경우 시공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산정이 지역의무공동비율 40%안에서만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지역의무공동비율 40%를 초과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22억원미만(시·군·구·기타는 제한없음) 공사로서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외 업체는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게 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II-1-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바, 이는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것으로 적격심사시에는 40%초과 또는 입찰공고문상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협정서상 지역업체의 지분율(시공참여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공동도급 구성원사의 자격미달에 관한 질의

■ 질 의 ■

□ 200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장기계속 공사와 관련 2007년도 1월 1차공사 준공 후 발주부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2차공사를 계약추진 하는 과정에 당초 공동도급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A, B사중 B사의 감리기술자 일부가 회사를 그만두어 당초의 공정대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 질의 1) B사가 전 공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불이행한 B사에 대해 부정당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

질의 2) B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분야에 참여하고 기술자 미확보로 자격을 반납한 분야에 대해 A사에서 추진했을 경우 지분조정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A사에서는 모든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그리고 당초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B사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나,

- 계약내용 변경,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 동 요령 III-8-가-(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이 출자비율 등의 변경을 승인하여 계약이행을 하는 때에는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와 회신

14. 공동도급 공사에서 물가변동시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공사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때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대표사 1개사 명의로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모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인감을 첨부하지 않고 대표사 1개사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I-2-나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서류제출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이 있으나,
- 계약의 체결(변경계약 포함)은 동 요령 III-3-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할 수 있을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공동도급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 질 의 】

- 공동도급시 입찰참가자격으로 교량1km 이상 실적제한 및 자격요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경우,
질의 1) A,B,C 3개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3개사 모두 교량1km 이상 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 또는 3개사 모두 자격요건은 갖추고,

3개사 중 1개 업체만 교량 1km이상 실적을 갖추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D, F사(출자비율 D사:F사=60%:40%)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단일건 교량 실적은 D사 500m, F사 700m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행자부예규 제189호) II.1.가.(2)에 의거하여 D,F사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은 $500m+700m=1.2km$ 로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D,F 업체 각각시공 실적이 1km미만이므로 입찰참가가 불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III-2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내 범위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며,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제한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제한규모 이상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이 제한규모 이상이 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경우 A : B : C가 시공비율을 50% : 40% : 10%로 공동도급한 경우라면 각각 1km이상 실적이 있어야 $(1km \times 50\%) + (1km \times 40\%) + (1km \times 10\%) = 1km$ 로 제한규모를 충족하게 되고, A만 실적있는 경우는 2km, B만 실적있는 경우는 2.5km, C만 실적있는 경우는 10km가 있어야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가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가 1인으로서 계약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과거의 실적을 1건 실적 그대로 인정하는 바, A : B : C가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동일실적 1km를 가지고 입찰참가하는 경우 각각의 시공비율로 곱하지 아니하고 1km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D : F가 출자비율 60% : 40%로 실적이 500m : 700m라고 하면,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실적이 제한규모에 미달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계산을 하더라도 실적인정은 $(500m \times 60\%) + (700m \times 40\%) = 580m$ 가 됩니다.

1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강제탈퇴 및 출자비율 변경에 관한 질의

Ⅰ 질 의 Ⅰ

A사(40%), B사(35%), C사(25%)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C사가 2007년 2월7일부로 최종부도 처리되어 A사, B사가 공동으로 2월7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C사의 탈퇴를 발주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2월14일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차로 보냈고, 이에 대해 C사가 수행하겠음을 보내왔고, 발주처는 이에 구체적인 계약이행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사의 답변이 왔으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강제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A사, B사 만으로 면허조건은 충족됩니다.

질의 1) 바로 강제탈퇴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중도탈퇴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강제 탈퇴시 출자비율을 변경해야 합니다. 잔여 지분을 인수시 잔여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Ⅱ 회 신 Ⅱ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부도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당해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발주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당해 구성원을 탈퇴 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 구성원의 동의없이 강제탈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출자비율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당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더라도 당해 계약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당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발

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남아있는 한 그 효력이 존속하는 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의 존속여부는 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다른 구성원 및 발주자의 합의에 의하여 탈퇴시킬 수 있으므로 중도탈퇴일은 잔존구성원이 합의하여 당해 구성원을 실제 탈퇴 조치한 날이 될 것이며,

- 가압류의 효력은 기성분에 대하여만 미치고 미기성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며, 당해 구성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잔존구성원이 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어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배분하므로 잔여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